

이혼하려는 부부의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김재연·이재연*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관·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Percep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during Divorce Procedure

Kim, Jae Yeon · Lee, Jae Yeon*

Investigator, Seoul Family Court · Professor, Seoul, Korea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education administered during divorce procedure on the perception of parent-education programs. The subjects were 60 couples who were in divorce procedure at the Seoul Family Court and had children under 20.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20 couples each: a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1 and experimental group 2 that were homogeneous in demographical and legal backgrounds. Experimental group 1 was shown pamphlets and videos on the role of divorced parents, and experimental group 2 was shown pamphlets and videos on the role of divorced parents as well as given explana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pamphlets and videos. No treatment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the two experimental groups showed improvement in their perception of the necessity for parent-education programs. Demand for the number of sessions and hours, and the effect was higher in experimental group 2 than in experimental group 1. With regard to the necessity of parent-education programs, experimental group 2 was positive particularly to mandatory injunction, the payment of education fees and expectation of helpfulness. All three groups expected that parent-education programs would be helpful.

Key words: divorce, parent-education, divorce procedure, parent-education program

I. 서론

이혼하는 부부가 2002년도 145,300쌍에서 2003년도 167,100쌍으로 15%나 증가하면서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통계청 2005).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4년도에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이혼절차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상담을 받는 상담제도와 일정기간동안 숙려기간을 두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 이혼 전 숙려제도와 상담제도의 내용을 담은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혼 전 상담제도와 이혼

접수일: 2007년 10월 1일 채택일: 2007년 11월 7일

Corresponding Author: Kim, Jae Yeon Tel: 82-2-375-7822

e-mail: kgy2002@unitel.co.kr

숙려제도를 두는 것에 대해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는 “성급한 이혼을 줄일 수 있고, 이혼에 대해서 신중할 수 있다”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한국여성단체에서는 “이혼 전 숙려 기간이나 상담을 강제화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혼 전 상담제도와 관련된 연구도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혼 전 상담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이부훈·이용성 2004)가 이루어졌고, 이혼 전 상담제도의 시행을 대비하여 이혼상담에서의 개인 대 부부상담의 쟁점을 고찰하거나 이혼 전 상담에서 상담심리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송정아 2004; 오제은 2004; 유계식 2004; 전영주 2005)가 이루어졌다. 이혼 전 부부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는데 ‘이혼 전 프로그램(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4)’, ‘건강한 이별준비프로그램, 체계적인 이혼을 위한 준비프로그램(부부 및 가족상담연구회 2005)’ 등이 그 예이다. 연구들은 이혼하려는 부부들을 위한 이혼 전 상담제도의 실시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였을 뿐 이혼하려는 부부들에 대한 의견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고,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이혼하는 부부의 63.3%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통계청 2005), 그 자녀의 수가 약 13만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절차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성인의 입장에서 논의되었고, 아동의 입장에서의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혼하려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혼 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혼 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훈구 2004; 주소희 2003), 이혼 후 부모교육프로그램(김득성 2002; 문현숙·김득성 2003), 이혼 후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연구(성정현 2002; 정문자·김은영 2005) 등이 있었다.

그러나 OECD국가 중 이혼율이 1위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혼절차의 프로그램은 이혼하려는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보다는 이혼하는 부모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져 있고, 미국의 많은 주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예: GRASP, HSCD, Making it Work Program)에 참여하도록 강제명령을 하고 있다(Warren & Amara 1984; Wolchik Wolchik et al. 1992). 오하이오 주의 이혼 후 아동지원프로그램(HCSD)의 경우, 이혼을 하려는 부모들에게 2시간 반동안 집중적으로 강의, 슬라이드 및 비디오 상영, 책자배부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대체적으로 한번에 100-150명의 부모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혼을 하는 부모로써 감정적, 사회적, 친교상의 그리고 금전상의 손실과 변화를 직면하는 성인의 이혼경험,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각 발달단계에 따라 감정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에 관한 아동의 이혼경험, 자녀 삶 속에서 양쪽 부모들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끊고, 부모로서 관계를 지속하는 공동양육관계 설정, 부모에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 후 아동지원프로그램(HCSD)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6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발표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참석 명령, 부모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 과거의 배우자 및 법적 절차에 대한 그들의 상호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 믿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혼하려는 부모들의 54%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였고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그들 자녀들의 이혼 경험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였다. 특히 이혼하려는 부모들의 73%가 세미나를 통해 자녀들의 생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들은 이혼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행동 방식에서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혼에 따른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을 소송보다는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도 65%나 피력하였고, 법적인 진행방식에 차이를 두겠다는 비율도 30%나 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을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부모

들도 23%나 되었지만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모들 중 86%의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다는 평가를 하였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Petersen & Steinman, 1994).

또한 매릴랜드 주의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프로그램(Making it Work Program)의 경우, 이혼하려는 부모들에게 3시간씩 2회가 진행되고, 강의식 교육, 역할놀이 및 토의 등의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감정변화 과정, 자녀들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입각한 이혼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들의 발달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들이 알도록 하는 정보를 제시, 양육계획, 자녀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아동들의 다양한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프로그램(Making it Work Program)에 대한 효과연구에서는 27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6개월 이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혼부모들은 자녀와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고,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변화 또한 향상되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들과의 심정적인 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모들은 워크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법원에 의해 부모상담과 부모교육이 현재처럼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이 상담과 부모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향상되었고, 변호사 및 조정관들과의 상담수도 감소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Gray, Verdick, Smith, & Freed, 1997). 위와 같이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명령의 취지는 부부에 이혼에 대한 자율권을 막기보다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강제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95%가 1-2회로 종결된다(Blaisure & Geasler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만 하면 1-2일 안에도 이혼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과 몇 개 법원에 한하여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선택하

거나 이혼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혼재판절차에서도 이혼절차의 조사기일, 조정기일에서의 담당자가 분쟁적인 이혼부부들에 대해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사항을 이혼절차에서 정하도록 권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실시하고 있는 협의이혼의 상담과 재판이혼절차에서 조사절차, 조정절차는 담당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혼하려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이혼과정과 절차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부들은 갈등관계가 심화되어 때로는 자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녀를 법정에 세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으로 자녀들의 피해가 크므로 그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이혼 관련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절차에서 이혼에 따른 자녀보호에 관한 '이혼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법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재판절차에 있는 부부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하여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프로그램 횟수와 총 구성시간요구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혼재판절차에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혼절차에서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방안과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된 프로그램보다 발전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 7월 20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재판절차에서 가사조사를 받기 위해서 온 부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자녀(만 0-20세)가 있는 부부 66쌍 중 면접에 응한 부부 60쌍(총 120명)이었다. 6쌍의 부부 중 5쌍은 부부갈등이 심하여 부모교육을 받

지 않겠다고 거부하였고, 나머지 한쌍은 부부는 한쪽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면접에 응한 부부 60쌍은 이혼소송서류를 통하여 이혼재판절차에 있는 법적인 사물관할, 반소여부, 부모의 나이, 학력을 동일 수준으로 하여 세개의 집단에 각 20쌍씩 빈도분포배합에 따라 나누었고, 세집단에 대해서 완전임의추출을 통해 통제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에 배치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and legal background of subjects by group

Variable	Value	Persons (%)		
		Control group (N=40)	Experimental group 1 (N=40)	Experimental group 2 (N=40)
Age	25~29	3(7.5)	3(7.5)	3(7.5)
	30~34	10(25.0)	10(25.0)	10(25.0)
	35~39	9(22.5)	10(25.0)	10(25.0)
	40~44	9(22.5)	9(22.5)	9(22.5)
	45~49	8(20.0)	7(17.5)	7(17.5)
	60~	1(2.5)	1(2.5)	1(2.5)
Academic qualification	Elementary school	3(7.5)	3(7.5)	3(7.5)
	Middle school	3(7.5)	3(7.5)	3(7.5)
	High school	20(50)	20(50)	20(50)
	College	13(32.5)	13(32.5)	13(32.5)
	Graduate school	1(2.5)	1(2.5)	1(2.5)
Yearly income (1000 won)	~9,600	6(15)	6(15)	6(15)
	9,600~18,000	6(15)	6(15)	6(15)
	18,000~24,500	4(10)	4(10)	4(10)
	24,500~33,500	6(15)	6(15)	6(15)
	33,500~66,200	10(25)	10(25)	10(25)
	66,200~	8(20)	8(20)	8(20)
No. of Children ¹	1	10(50)	10(50)	10(50)
	2	10(50)	10(50)	10(50)
Counterclaim ²	Yes	6(15)	6(15)	6(15)
	No	34(85)	34(85)	34(85)
Respondent ³	Plaintiff	20(50)	20(50)	20(50)
	Defendant	20(50)	20(50)	20(50)
Type of material jurisdiction ⁴	Deuhap case	12(30)	12(30)	12(30)
	Deudan case	26(65)	26(65)	26(65)
	Jojeong case	2(5)	2(5)	2(5)

1. The number of children was expressed as frequency because it is the number of children who a couple have.
2. Counterclaim: This means that the defendant also claims a divorce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claimed a divorce. This happens usually when the couple agree with divorce but they claim that the divorce is attributed to each other.
3. Of the respondents, plaintiffs are the spouses who claimed a divorce and defendants are the spouses who answer the claim.
4. Material jurisdiction: This means which of the collegiate part and the single-judge part of the district court takes charge of the trial. Among domestic litigations, Da-type cases, in which the value of the object of lawsuit exceeds 50 million won, are brought to the collegiate part and marked 'Deuhap case'. Ga-type cases, Na-type cases, and Da-type cases, in which the value of the object of lawsuit is below 50 million won, are brought to the single-judge part and marked 'Deudan case' (Paragraph 1 of Clause 1 of Article 40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Clause 2 of Article 2 of Regulations on the Material Jurisdiction of Civil and Domestic Litigations). 'Jojeong case' denotes a case that the plaintiff filed the suit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a divorce or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case could be settled amicably and thus transferred the case to the mediation committee. Because the degree of dispute and the procedure of trial are different among the case types, we divided the subjects into the three groups.

조사이후 세집단간 인구학적인 특성과 법률적인 특성에 대해서 χ^2 검증을 한 결과 성별, 나이, 연수입, 자녀수, 사물관할유형, 반소유무, 소송제기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집단별 인구학적인 특성과 법률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이혼부모가 결혼하여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평균 개월수, 세집단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보호요소수준은 세집단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을 유지했던 보호요소인 자녀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 편견적인 요인, 신념과 종교요인, 법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요인의 특성에 대해서 요인별 세집단간 차이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실험설계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행

본 연구는 실험처치의 유무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실험집단은 부모교육개입정도에 따라서 각각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로 구분되었으며, 각 집단은 20쌍씩 배치되었다. 통제집단은 한쌍의 부부에게 어떠한 자극에도 노출하지 않고, 조사실에서 이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20분간 주었다. 그 후 연구자는 기본적인 인사말과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각각 구조화된 질문도구를 기초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였다.

실험집단1은 한쌍의 부부에게 5층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팸플렛을 읽고 비디오를 보도록 권유하였다. 팸플렛을 읽을 수 있는 시간으로 20분을 주었고, 5층 조사대기실에서 35분 동안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한 후 부부는 조사실로 이동하였다. 연구자의 기본적인 인사말과 가사조사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시간 20분을 준 후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였다.

실험집단2의 부부에게는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35분 동안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권유한 후 부부는 조사실로 이동되었다. 연구자가 부부와 함께 팸플렛을 보면서 팸플렛에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어주었고, 상영된 비디오에 관하여서도 비디오에서 문자로 제시된 내용과 심리

학자가 설명을 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20분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20분간 준 후 연구자가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였다. 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행은 2004년 7월 20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3.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내용

(1) 팸플렛

서울가정법원의 도움나무 팸플렛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얻어냈던 부모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캔사스 주, 오하이오 주, 매릴랜드 주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5단계로 구성되었다(김재연 2003). 첫 단계 내용은 이혼부모가 자신의 분노감정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이혼부모에게 이혼과정에서 양육문제에 관하여 의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둘째 단계 내용은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겪는 행동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각 발달단계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제시되었다. 셋째 단계 내용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넷째 단계 내용은 이혼부부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대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으며, 이혼 후 전배우자와 공동양육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단계 내용은 이혼의 문제해결방법에 대해서 이혼부부들에게 조정을 선택하거나 가족상담을 권고하였다(Table 2). 팸플렛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총 8면의 접이식으로 되어있고, 내용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으며, 칼라로 구성되어있다.

(2) 비디오

버지니아 주 법률가협회가 제작한 "Spare the child" 비디오의 내용은 판사, 변호사, 조정위원, 발달심리학자 등이 출연하여 이혼하는 부부와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와 대처방법들에 대해

Table 2. Composition of the Help Tree pamphle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ograms in each state in USA

Name Stage	'Workshop for separated couples and children' by the district court of the state of kansas grasp (esser 1994)	'Program for child support after divorce' by the district court of the state of ohio hscd (petersen & steinman 1994))	Child rearing program for divorced families by the montgomery district court of the state of maryland (gray et al. 1997)	Help Tree pamphlet
1	a. Method of connecting parents and children in the process of pains (1) Pains experienced by children from the divorce of their parents (2) Emphasize the necessity of parents' behavioral change to reduce stress in children	a. Adults' experience in divorce - Even if a couple lose their spouse through divorce, they as parents need to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the ex-spouse for child rearing.	a. First session (1) Emotional changes in parents and children during divorce procedure (2)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developmental stage	a. Suggest the child rearing problem during divorce procedure
2	b. Pain games played by divorced families - Behavioral patterns that divorced couples fail to control their emotion and play pain games through their children	b. Children's experience in divorce (1)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of divorce that children are faced with in their developmental stage (2) Parents' behaviors that can help their children in the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 (3) Methods for parents to talk with children about divorce	b. Second session (1) Parents' method of treating children during divorce procedure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developmental stage (2) The negative impact of divorced parents' inadequate communication methods on children's relation with their parents	b. Experiences that children have during divorce procedure and what parents can do for their children (1)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of parents' divorce that children are faced with in their developmental stage (2) Parents' behaviors helpful to children during divorce procedure according to the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
3				c. Methods for parents to talk with children about divorce
4	c. The establishment of triangular relation through separation and partnership relation for child rearing - Suggest methods for co-parenting relationship with the ex-spouse after divorce	c. Establishment of co-parenting relationship (1) Reduce divorced parents' anger and conflict and protect children from the parents' war (2) Suggest a model of co-parenting relationship		d. Establishment of co-parenting relationship - Words and deeds that parents should refrain themselves from during divorce procedure
5	d. Describe controversies over and choice between custody and visitation right (1) Joint protection of children (2) Introduction to mediation service and information on how to use the service	d. Problem solving methods (1) A lawsuit makes children have enmity against their parents. (2) Provide information on mediation and family counseling for solving conflicts through sound methods		e. Problem solving methods (1) Discussion and mediation for solving conflicts through sound methods (2) Provide information on family affair counseling

Source: Jae yeon Kim(2003) Study on consideration of divorce workshop at divorce procedure of US court: Theoretical background of seoul family court pamphlet production, Staff Practical Affairs Research 9, 562-563.

설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잘못된 예와 바람직한 예를 짝맞춘 드라마가 상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심리학자가 출연하여 이혼부부가 가질 수 있는 이혼에 대한 정서적인 충격,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이 가지는 정서적인 충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부부의 갈등관계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하여 문자로 제시되었으며, 그 사례에 대해서 바람직한 예와 바람직하지 않은 예에 대하여 단편적인 드라마를 보여준다. 이혼하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동의 이혼적응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제시되었고, 다시 발달심리학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공동양육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면접교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논하는 방법을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판사, 조정위원, 변호사가 출연하여 이혼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과 협의나 조정의 선택을 권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의 법원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Spare the child" 비디오는 35분 정도의 시간으로 되었고, 칼라로 된 화면과 영어음성으로 설명되어 있었으나 여운국과 김재연(2004)에 의하여 이 설명들이 비디오(DVD)에 한글로 자막처리되었다.

(3) 연구자의 설명

연구자는 팸플렛에서 제시된 5단계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었고, 비디오 내용순서대로 이혼부부와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충격, 비디오에서 문자로 제시되었던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바람직한 예와 바람직하지 않은 예에 대한 드라마내용,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의논하는 방법, 자녀들에게 면접교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순으로 설명하였다. 이혼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과 협의나 조정의 선택을 권유하였고, 부모들이 이혼문제를 스스로 해결에 대해서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팸플렛과

비디오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연구자의 설명시간은 20분으로 실험집단 1에서 팸플렛을 보도록 권유된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모교육실시가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지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횟수와 총 구성시간 요구도, 결혼유지를 위한 보호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한 내용은 Taylor(1997)의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이후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관한 질문지 중 부모교육 필요성에 관한 4문항, Kramer와 Washo(1993)의 이혼절차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평가에 대한 질문지 중 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질문 3문항이 사용되었고, 결혼유지를 위한 보호요소는 이경성(2001)이 1,500명의 일반적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하여 추출된 5문항이 사용되었다.

이혼절차에서 부모교육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질문 4문항(신뢰도 $\alpha=0.97$) 중 3문항은 이혼절차에서 만약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절차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법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교육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까의 질문이고,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1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 내용 중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의 질문으로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였다.

이혼절차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질문 3문항(신뢰도 $\alpha=0.85$)으로 첫 번째 문항은 만약 이혼절차에서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몇 회기로 이루어져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의 질문으로 응답은 부모교육프로그

램이 필요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중 선택 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문항은 만약 이혼절차에서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총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로 응답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필요 없음, 1시간 이하,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나머지 1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으로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였다.

결혼을 유지했던 보호요인인 자녀요인(신뢰도 $\alpha=0.94$), 경제적인 문제요인(신뢰도 $\alpha=0.95$), 사회적 편견요인(신뢰도 $\alpha=0.96$), 신념이나 종교요인(신뢰도 $\alpha=0.97$), 법적방법요인(신뢰도 $\alpha=0.98$) 이 각 요인별로 “이제까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자녀 때문에 이혼하기가 어려웠었다”는 형식으로 질문되었고, 응답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으로 5점척도로 사용되었으며, 위 5문항은 세집단의 연구대상자의 결혼의 보호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5. 실험절차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모교육 실시되지 않고 있고, 법규정이 없어 집단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버지니아주의 부모교육프로그램과 같이 팜플렛과 비디오만을 활용하되 집단교육이 아닌 한쌍의 부부씩 부모교육을 하도록 실험설계가 되었다.

먼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얻어졌던 부모교육 프로그램효과를 얻기 위해서 캔사스 주, 오하이오 주, 매릴랜드 주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도움나무 팜플렛이 만들어졌고, 버지니아 “Spare the child”비디오의 영어음성이 한글로 자막처리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비디오와 팜플렛에 대한 도구와 측정질문지를 국내사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혼재판 중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온 부부 중 민법상 미성년자의 자녀(만 0-20세)가 있고, 면접에 응하겠다는 3쌍을 대상으로 측정도구검사가 실

시되었다. 도구검사는 한쌍의 부부에게 5층 조사 대기실에서 비디오를 보도록 하고, ‘도움나무’ 팜플렛이 배부되었으며, 본 연구자의 설명이 실시된 후 질문지에 관한 면접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도구검사를 통해 비디오의 자막글자의 포인트를 확대되었고, 질문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도록 용어변환을 하거나 부적절한 질문문항은 수정되었다.

본 실험은 2004년 7월 20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수정된 도구와 질문지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실험설계와 부모교육프로그램실행대로 실시되었고, 실험이후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실험분석은 통계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의 인구론적인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의 연수입,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등의 인구학적인 특성, 결혼유지에 대한 보호요소에 대해서 통제집단과 두 실험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고, 카이검증과 분산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제기된 문제에 따라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집단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산분석이 실시되었고, 프로그램 횟수와 총 구성시간요구에 대해서 카이검증이 실시되었으며, 개방형질문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들을 모아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차이검증을 한 결과 세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사결과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예측, 교육비용지불여부에 관해서 실험집단 2가 가장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실험집단 1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강제명령여부에 대해서는 실험집단 2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실험집단 1은 중간정도이었으며, 통제집단은 가장 낮았다(Table 3).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예측은 평균 5점 중에 실험집단 2는 평균 4.70점, 실험집단 1은 평

Table 3. Comparison on the need of parent-education programs among the groups

	Group	N(couple)	Mean(SD)	F	Duncan
Expectation of help	control group	40(20)	4.05(0.75)	9.59***	b
	experimental group 1	40(20)	4.22(0.77)		b
	experimental group 2	40(20)	4.70(0.56)		a
Whether mandatory injunction or not	control group	40(20)	2.17(1.21)	20.04***	c
	experimental group 1	40(20)	2.85(1.46)		b
	experimental group 2	40(20)	4.00(1.22)		a
Whether the payment of tuition or not	control group	40(20)	2.58(1.34)	6.65**	b
	experimental group 1	40(20)	3.03(1.31)		b
	experimental group 2	40(20)	3.58(1.01)		a

p<.01, *p<.001

군 4.22점, 통제집단은 평균 4.05점이었고, 모두 평균 4점이상으로 세집단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던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도움된 내용이 무엇이었는데에 관한 개방형질문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연령별로 이혼과정에서나 이혼 후에 해주어야 할 일(23명), 연령별로 이혼충격으로부터 자녀가 행동하는 반응(18명),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10명), 자녀들을 걱정하고 다시 생각하게 됨(7명),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6명)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강제명령의 경우 실험집단 2는 평균 4.00점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실험집단 1은 평균 2.85점이었고, 통제집단은 평균 2.17점으로 실험집단 2에 비하여 현저

하게 낮았다.

2. 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프로그램 횟수와 총 구성시간에 대해서 세집단간 독립성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횟수와 총 구성시간에서 통제집단보다 두 실험집단에서 횟수와 총 구성시간이 증가하였고, 실험집단 1보다 실험집단 2에서 횟수와 총 구성시간이 증가되었다 (Table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적당한 횟수에 대해서 통제집단은 1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명수가 24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집단 1은 1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명수가 15명(37.5%), 2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명수가 14명(35.0%)으

Table 4. Perception on the number of sessions and time demanded for parent-education program by group

Reply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1	Experimental group 2	Total	χ^2
	N=40	N=40	N=40	n=120	
Demanded number of sessions	Not necessary	4(10.0)	3(7.5)	0(0)	48.28*** (df=8)
	1	24(60.0)	15(37.5)	5(12.5)	
	2	8(20.0)	14(35.0)	7(17.5)	
	3	3(7.5)	8(20.0)	17(42.5)	
	4 or more	1(2.5)	0(0)	11(27.5)	12(10.0)
Demanded total number of hours	Not necessary	4(10.0)	3(7.5)	0(0)	49.13*** (df=10)
	Less than 1 hour	23(57.5)	10(25.0)	3(7.3)	
	1~2 hour	7(17.5)	12(30.0)	5(12.5)	
	2~3 hours	2(5.0)	6(15.0)	11(27.5)	
	3~4 hours	2(5.0)	6(15.0)	4(10.0)	
	4 hours or longer	2(5.0)	3(7.5)	17(42.5)	22(18.3)

***p<.001

로 많았으며, 실험집단 2는 3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명수가 17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당한 총 구성시간에 대해서 통제집단에서는 1시간이하가 23명(57.5%)으로 가장 높았고, 실험집단 1에서는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사이가 12명(30%)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험집단 2에서는 4시간이상이 17명(42.5%)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의 개입정도가 증가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와 총 구성시간요구정도가 증가되었다.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시간과 횟수가 증가된 만큼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개방형질문을 한 결과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더 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응답이 33명(41.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팜플렛의 새롭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5명), 비디오가 한국인 출연자로 새롭게 구성되어져야 된다(5명), 비디오자막이 한국어로 더빙되어졌으면 좋겠다(4명)순이었고, 실험집단 1에서는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2명이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아무런 자극에 대한 노출이 없었던 부부, 이혼하려는 부모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팜플렛과 비디오에만 노출시켰던 부부, 이혼하려는 부모역할에 대해서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을 해주었던 부부간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횟수와 구성시간 요구도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정도가 높은 집단이 개입이 적은 집단보다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 요구가 높았다.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을 해주었던 부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장 높았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던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개방형질문에서도 부모들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내용은 발달단계별로 이혼과정에서 부모가 해주어야 될 일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연령별로 이혼충격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는 반응이 18명이었다. 특히 이혼과정에서 부모가 해주어야 될 일이라는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연령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이혼 후에도 연령별로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자녀가 이혼충격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는 반응들이라는 의견의 응답자도 '자신의 자녀들이 연령별로 어떠한 충격을 받는지 알 수 있다. 자녀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자신의 자녀에 연령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법정에서 명령되어지는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집단이나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던 집단 모두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McKenry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보고한 Gray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도움예측에서 세 집단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반하여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비디오와 팜플렛만 제시된 집단은 평균 2.85점이었고,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은 집단은 평균 2.17점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설명이 포함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만 평균 4.00점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 결과는 이혼부모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을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부모들도 23%나 되었으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모들 중 86%의 대다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다는 평가를 하였다고 보고한 Petersen와 Steinman (1994)

연구와 Utah주에서의 3,282명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법원출구조사에서 이혼부모 중 56%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보고했으나 93%는 이혼부모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89%는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Blaisure와 Geasl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부모교육에 대해 설문에 응하겠다고 대답을 한 부부인 것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강제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반발이 통제집단의 강제명령에 반대하는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대상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명령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한다는 그 자체가 거부감이 느껴짐으로 이혼재판절차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강제적으로 명령되기 이전에 홍보를 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혼재판절차 중인 부모에게 조금씩이라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익숙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매우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져야 된다는 의견 중에는 '부부가 같은 장소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에서 강제명령되어져야 하고, 이혼과정에서 자녀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강제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라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이혼부모역할에 관한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을 해주었던 부부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많았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에는 '비용을 지불할 만큼 체계적이며, 질 좋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

어야 된다. 자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일부금액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질문에는 1회당 2만원이하이면 적당하고 5만원이상이라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가계형편에 따라서 차등이나 분할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31%이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였다. 의견 중에는 '비용에 따라 지불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 비용지불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강제적으로 명령되어진다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하게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 등이 있었다. 전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20.0%이었고, 이 응답자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가의 부처 중에서는 법원(사법부), 보건복지부, 여성부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50%는 국가에서 지불을 하고, 50%는 부모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지불해야 한다. 부모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모금형식으로 모아지거나 복지단체의 기금을 활용하여야 된다. 다른 수익사업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지불의견과 미국에서의 부모교육비용의 지불금액과 비용의 자원에 활용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카운티가 받는 금액은 21불에서 30불(한화로 약 22,000-33,000원정도)로 보았을 때 응답자의 의견들과 매우 흡사하였으며,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의 비용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카운티도 8.8%(43개)나 되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자금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교육프로그램참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카운티는 332개였고, 다음으로는 법원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카운티는 119개이었으며, 다양한 자

원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카운티는 104개, 기타비용으로 운영되는 카운티는 61개, 제출서류접수비용으로 운영되는 카운티는 39개, 허가비용으로 운영되는 카운티는 34개, 정신건강공동모금으로 운영되는 카운티는 18개이었다(Blaisure & Geasler 1996).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의견과 같이 법원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카운티와 정신건강공동모금 같은 복지단체의 모금으로 비용지불을 대체하고 있는 카운티도 있었다. 그러나 이혼재판절차에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질이 높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정상에서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가가 법원의 과제일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의 개입정도가 증가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와 총 구성시간요구가 증가되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횟수와 총 구성시간요구에 있어서 부모교육에 대해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았던 부부보다는 프로그램을 접한 부부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횟수가 증가되어야하고 시간이 길어져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팜플렛과 비디오만 노출되었던 부부보다는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해서 연구자가 설명하였던 부부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횟수에 대해서 더 증가되어야하고, 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자의 프로그램의 횟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회가 적당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회가 24.2%이었다. 이것은 Blaisure와 Geasler(1996)의 미국의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의 카운티별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회인 경우 67%(331개 카운티)이었고, 2회인 경우가 27.2%(133개 카운티)인 것과 유사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더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4회이상 되어야한다는 의견 또한 10%나 있었고, 미국의 12개 카운티는 부모교육이 4

회이상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혼하려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최대한 반영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자의 프로그램의 총 구성시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시간이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은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이 20.0%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4시간이상인 18.3%이었다. 미국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구성시간을 보았을 때 2시간이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시간이 26.4%이었다(Blaisure & Geasler 1996). 미국의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2시간 또는 4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설명이 들어간 부부집단의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요구도를 살펴볼 때 4시간이상인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이상 3시간미만이 27.5%정도로 연구자의 설명이 들어간 부부의 요구시간과 미국의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 시간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시간과 횟수가 증가된다면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방형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더 보완되어야 될 내용으로 발달단계별로 이혼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하는 방법, 부정적인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대처방안과 구체적인 양육방법이 설명되어진 안내책자가 필요하다, 이혼부모를 가진 자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소개가 필요하다, 팜플렛과 비디오에만 노출된 부부집단에서는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나 조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혼하려는 부부는 더 질 높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원하였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요구도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하면 부모교육에 대한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았던 부부보다는 팜플렛과 비디오에 노출시켰을 부부가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팜플렛과 비디오에만 노출되었던 부부보다 팜플렛과 비디오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을 해주었을 때 프로그

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프로그램의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하여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제명령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이혼절차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지도록 하되 이혼하려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 이전의 절차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혼재판절차 중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때에는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거나 첫 법정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새로운 기일이 부과되어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든지, 법정기일시작직전에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방안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숙려기간 사이에 실시되거나 협의이혼 결정 이전에 대기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홍보를 하거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이혼과정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부모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기 보다 이혼하려는 부모의 욕구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비디오도 한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되어 외국의 예로 생각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비디오내용도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드라마를 보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팸플렛 내용보다 법률적인 절차와 함께 이혼 전 부모교육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이 단시간에 만들어지기보다

는 외국문헌의 충실한 검토와 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작되어져야 되고, 항상 발전적인 내용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셋째, 이혼하려는 부모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져야한다. 법원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다수의 이혼하려는 부모가 원하는 제한된 시간과 횟수로 진행되어져야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깊은 내용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기관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필요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동상담기관, 시설기관, 복지관관련기관에서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넷째, 팸플렛과 비디오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적인 요인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이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혼하려는 부모들의 질 높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만 된다.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부들이 아동의 발달단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발달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혼하려는 부모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이혼부모교육과 아동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따른 재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하는가와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의 규모와 형식 또한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절차에서 조사기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의 1회에 각 한쌍의 부부만으로 실시되었지만 미국에서는 1회에 30-150명의 집단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횟수와 교육인원은 각 카운티별 재정상태와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가장 효율

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과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횟수와 시간요구에 따른 인식증진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방형질문을 통해 이혼재판절차에 있는 부부들이 어떤 내용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혼재판절차 중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받는 것에 동의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혼 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동의하지 않은 부부들이나 협의이혼절차에 있는 부부들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한쌍씩 실시하였고, 교육도 주로 비디오와 팜플렛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집단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을 때와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을 때에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혼하려는 부모들의 요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부모교육프로그램보다 개선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와 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을 때의 효과성에 관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혼법정에서 이혼하려는 부부사이의 자녀를 보호하고,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효과적인 역할을 하며, 이혼하려는 부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제작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득성(2002) 이혼적응교육프로그램에 효과성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김재연(2003) 미국법원의 이혼절차에서 이혼위크샷의 고찰에 관한 소고: 가정법원 도움나무 팜플렛제작의 이론적 배경. 직원실무연구 9, 547-565.
 문현숙·김득성(2003) 이혼적응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집단 마라톤식 과정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1), 201-214.
 성정현(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9, 31-51.

송정아(2004) 이혼 전 상담의 실제. 한국가정의 위기와 상담,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는문자료집, 66-82.
 오제은(2004) 이혼 전 상담제도와의 중요성. 한국가정의 위기와 상담,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논문자료집, 34-43.
 유계식(2004) 이혼 전 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심리학의 역할. 학생생활연구 18,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7-55.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여성 6(2), 97-119.
 이부훈·이용성(2004) 이혼 전 상담제도.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8(2), 73-87.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7-53.
 전영주(2005) 이혼 전 상담의 임상적 쟁점에 대한 고찰. 상담학 연구 6(1), 245-260.
 정문자·김은영(2005) 이혼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3(3), 161-183.
 주소희(2003) 부모이혼 후 아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청구논문.
 통계청(2005)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www.nso.go.kr.
 Blaisure KB, Geasler MJ(1996) Results of a survey of court-connected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U. S. countie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1), 23-40.
 Esser RC(1994) Families in transition: A divorce workshop.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2(1), 40-49.
 Gray C, Verdick MJ, Smith ED, Freed K.(1997) An evaluation of court-mandated parenting workshops for divorcing familie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 Review 35(1), 280-292.
 Jae yeon Kim(2003) Study on consideration of divorce workshop at divorce procedure of US court: Theoretical background of seoul family court pamphlet production, Staff Practical Affairs Research 9, pp.562-563.
 Kramer L, Washo CA(1993) Evaluation of a court-mandated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Relations 42, 179-189.
 McKenry PC, Clark KA, Stone G(1999) Evaluation of parent-educa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Relations 48, 129-137.
 Petersen V, Steinman, SB(1994)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A court-mandated educational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2(1), 27-39.
 Taylor RJ(1997) A Survey of community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parenting after divorce progra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on institute graduate school, social psychology.

Warren NJ, Amara AA(1984) Educational groups for single parents The parenting after divorce programs. *Journal of Divorce* 8, 79-96.

Wolchik SA, West SG, Westover S, Sandler II, Martin A, Lustig J, Tein J, Fisher J.(1992)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ject: Outcome evaluation of an empirically based parenting program.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서울가정법원(2003) “도움나무” 팸플릿.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4) ‘이혼 전 프로그램’ 홍보지.
Virginia State Bar(여운국 · 김재연 2004) “Spare the child”. 비디오.
Virginia State Bar. “Spare the child”. 팸플릿.

기타자료

부부 및 가족상담연구회(2005) ‘건강한 이별준비프로그램’ 홍보지.